

Policy and Law Report _Vol.128

- 정부 주요 정책 및 입법정보 등에 관한 동향 (2022.03.21.~ 2022.03.27) -

March 28, 2022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의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는 정부 주요정책, 국회에 접수된 의안현황, 입법(행정)예고 법안 현황 및 향후 국회의 주요 일정 등에 대한 신속한 정보제공을 통해 입법 및 정부규제 등과 관련하여 고객들께서 발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마련되었습니다. 특히, 기존 정책의 변경이나 고객들의 이해관계와 직결되는 법안이나 정부정책들은 빠짐없이 선별하여 추후 고객들께서 불이익이나 피해를 입지 않도록 하는데 초점을 두고 있으므로, 매주 (또는 격주) 발송되는 ‘주요 정책 및 입법 동향 레터’를 잘 활용하신다면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Letter 목차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2. 주요 입법(안) 동향
 - ① 공포 법안
 - ② 입법(행정)예고 법안
 - ③ 법률 발의안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1. 정부 주요 정책 동향 *해당 제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부처	내용	일시
산업통상 자원부	• <u>산업혁신기반구축 로드맵('23~'25년) 수립</u> 산업통상자원부는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의 보다 전략적인 운영을 위해 마련중인 「'23~'25년 산업혁신기반구축 로드맵(안)」에 대한 산학연 의견수렴을 위해 지역별 순회 공청회를 개최함 * 중소·중견 기업이 직접 마련하기 힘든 R&D 인프라를 대학 및 공공기관에 구축하여 기업의 실증, 사업화 등 기술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산업혁신기반구축사업의 전략적 운영을 위해 6개 분과별 로드맵 마련 ② '23년부터 연차적으로 로드맵에 따른 연구개발(R&D) 인프라 투자 추진 ③ 로드맵 투자계획에 대한 산·학·연 의견 수렴을 위한 지역별 공청회 개최, 4월중 확정안 발표	2022-03-22
보건 복지부	• <u>「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9차 회의 개최</u> 보건복지부는 의약단체*들과 「보건의료발전협의체」 제29차 회의를 개최하여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방향,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지원대상 내 전문직종 포함 여부, 의료기관 업무 연속성 계획 적용 현안 및 개선안, 감기약 공급 부족 개선을 위한 협조 요청 등을 논의함 *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 대한한 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대한간호협회, 의약품유통협회 주요 내용으로는 ①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추진방향 - 대한의사협회는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 과정에서 책임 소재, 의료데이터 관리 문제 등 여러 논의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되므로 현장과 소통하기 위한 협의체 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 - 대한약사회는 디지털 헬스케어 정책 추진 과정에서 약료 데이터를 활용할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을 밝힘 - 대한한 의사협회, 대한간호협회 등은 디지털 헬스케어 추진 과정에서 한의사, 간호사 등 여러 의료인의 역할이 함께 고려되어야 한다고 의견 제시	2022-03-22

부처	내용	일시
	② 코로나19 환자 급증에 따른 감기약 공급 부족 개선을 위한 협조 요청 - 보건복지부는 최근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하며 감기약(특히 시럽제) 수급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계에 필요한 의약품만큼 처방, 정제 처방 우선원칙, 의약품 부재 시 약국 등과 적극 협조 등 요청 - 대한의사협회는 현장에서 감기약 공급 부족 문제를 인지하고 있으며 유증상자 중심으로 의약품을 적정량만 처방하는 등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 협조하기로 함 ③ 의약품 공급 부족 문제 개선 및 대체조제 사후통보 한시적 면제 -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공급 문제 해소를 위해 처방일수 조정, 의약품 균등 공급, 동일성분·동일효능군 조제 장려 등 보완 방안이 필요하다고 의견을 제시하였고, 코로나19 확진자 원외 처방 시 대체조제에 따른 사후통보 의무를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안을 제안함 - 대한의사협회, 대한병원협회는 의약품 공급 부족 문제 해결 필요성에 공감하나,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는 의사가 환자의 복용 의약품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한 사안이라는 의견을 밝힘 ④ 소상공인 코로나 피해 지원 대상 전문직종 포함 여부 논의 - 대한한 의사협회, 대한치과의사협회는 경영난이 심각한 소규모 의료기관이 많지만 전문직종은 방역지원금 등의 지원대상에서 일괄적으로 제외되어 있으므로 전문직종도 연매출액, 매출액 감소 등 세분화된 기준에 맞춰 선별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의견 제시 ⑤ 의료기관 업무 연속성 계획 적용 현안 및 개선안 - 대한간호협회는 의료기관 업무 연속성 계획에 따라 확진된 간호사가 현장에 투입될 경우 환자를 감염시킬 우려가 있으며, 환자로부터 소송이 발생하는 등 의료진 보호가 어려운 상황이 발생할 수 있어 보완 필요함 ⑥ 코로나19 방역체계 정책결정 시 처방전 조제약 전달체계 고려 건의 - 대한약사회는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를 통한 코로나19 확진검사체제로 변경 후 확진자의 의약품 직접 수령으로 약국 내 감염위험 노출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방역체계 결정 시 약사회 등의 의견수렴 필요	
환경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탄소중립 사회로의 전환을 위한 30여년 여정의 길라잡이가 될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3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힘 법 시행으로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되며, 중간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대폭 상향하여 진정성 있는 정책추진 의지를 법제화하게 됨	2022-03-22

부처	내용	일시
	주요 내용으로는 ① (비전 · 이행체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②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적용, ‘기후변화영향평가’ 단계적 도입 (’22.9~) ③ (정의로운 전환) 취약계층 · 지역 보호, ‘기후위기적응대책’ 5년마다 수립 · 점검 ④ (재정 · 실천기반) 기후대응기금 운영 (’22~, 2.4조원),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도 시행 (’22~)	
방위 사업청	• 방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방 중소 · 벤처기업 지원 추진 방위사업청은 2022년 국방 중소 · 벤처기업 종합 지원시책에 이어 2022년 부품국산화 사업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부품국산화 개발지원사업, 국방벤처지원사업 등 방위산업육성 지원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고 밝힘 이번 추진계획을 통해 글로벌 공급망 교란에도 안정적으로 무기체계 소재 · 부품을 수급하고 국산 무기체계의 글로벌 경쟁력을 향상시키기 위해 부품국산화 지원을 통한 실질적인 성과창출에 주력할 계획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체계적인 부품국산화 추진을 위해 중장기 발전방향을 수립하고 사업 포트폴리오 다양화 및 부처협력을 통한 맞춤형 부품개발 추진 ② 부품유형을 핵심부품, 수출연계형부품, 전략부품으로 나누어 맞춤형 개발지원을 실시하고 부품국산화 사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전문조직의 사업관리 내실화 추진 ③ 부품기업의 부품국산화사업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방산분야 신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민간과 협력 강화	2022-03-21

2. 주요 입법(안) 동향

① 공포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환경부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 (2022.3.25. 시행, 일부 조항 예외)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제도와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달성하기 위해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과 각종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하며,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녹색기술·녹색산업 육성·지원 등 녹색성장을 지원하는 정책수단과 이를 뒷받침할 기후대응기금을 신설하는 등의 내용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이 제정(법률 제18469호, 2021. 9. 24. 공포, 2022. 3. 25. 시행)됨 이에 따라,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관리,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 및 방법,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의 수립,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기후대응기금 설치 및 운용에 필요한 사항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의 설정·관리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이행 현황 점검 (제3조 및 제4조) - 정부의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2030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을 2018년 대비 40퍼센트 감축하는 것으로 정함 - 환경부장관은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 및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변경에 관한 업무를 총괄하도록 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전력수급기본계획 등 소관 계획을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에 부합하게 수립·변경하도록 함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연도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이행현황을 매년 점검하도록 하고, 그 결과보고서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위원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②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등의 수립·변경, 추진상황 점검 방법 및 절차 등 (제5조부터 제8조까지) - 정부는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공청회 개최 등을 통하여 관계 전문가나 국민,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하고,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또는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지역주민, 관계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도록 함	2022-03-25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위원장은 국가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추진 상황과 주요 성과를 점검하기 위한 계획을 매년 수립하도록 함 -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시·도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 또는 시·군·구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추진상황과 주요 성과에 대한 점검 결과 보고서를 매년 5월 31일까지 환경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함 ③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구성·운영 등 (제10조부터 제14조까지) -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공무원 위원을 교육부장관, 외교부장관, 통일부장관, 행정안전부장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보건복지부장관, 고용노동부장관, 여성가족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등으로 정함 - 사무처의 사무처장은 국무조정실장이 지명하는 국무조정실 소속 정무직 공무원으로 하며, 사무처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 ④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 및 방법 (제15조 및 별표 2) - 기후변화영향평가의 대상을 전략환경영향평가 및 환경영향평가 대상 중 에너지 개발, 수자원 개발, 산지 개발, 도로 건설,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분야 등의 계획 및 개발사업으로 정함 -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계획을 수립하려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기후변화 관련 법령·제도, 해당 계획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 및 온실가스 감축 방안 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기후변화영향평가 대상 개발사업을 시행하려는 사업자는 개발사업 실시에 따라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량 및 감축 방안 등을 고려하여 기후변화영향평가를 실시하도록 함 ⑤ 공공부문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제17조)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기관*을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 공공기관, 지방공사·지방공단, 국공립대학, 한국은행 및 금융감독원으로 정함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 기관: 정부가 국가비전 및 중장기 국가 온실가스 감축 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해 기관별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관리하도록 하는 기관 -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 대상 기관의 장은 매년 12월 31일까지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하고, 그 이행실적은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전자적 방식으로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하도록 함 ⑥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목표관리 (제18조부터 제27조까지) -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등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농림·축산, 산업·발전 등 소관 분야별로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의 설정·관리에 관한 업무를 관장하도록 하고, 환경부장관은 이를 총괄·조정하도록 함 *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 일정 기준량 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업체로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설정·관리하도록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이 지정한 업체 - 부문별 관장기관의 장은 최근 3년간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총량이 5만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업체이거나 연평균 온실가스 배출량이 1만5천이산화탄소상당량톤(tCO₂eq) 이상인 사업장을 1개 이상 보유하고 있는 업체에 대한 환경부장관의 검토 결과를 고려하여 온실가스배출관리업체를 지정하도록 함	

소관부처	법률안	공포일자
	⑦ 탄소중립도시의 지정 등 (제28조) - 탄소중립도시 지정을 요청하려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탄소중립도시 지정의 필요성과 탄소중립도시 조성목표, 사업분야별 추진계획 등을 포함한 지정 요청서를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과 국토교통부장관은 탄소중립도시를 지정한 경우에는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에 보고한 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지체없이 통보하도록 하고, 사업규모, 지정 사유 등을 환경부 및 국토교통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각각 공고하도록 함 - 정부는 한국수자원공사, 한국환경공단,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을 지원기구로 지정하여 탄소중립 도시 조성 사업 계획의 수립·시행 및 이행점검, 조사·연구 등을 수행하도록 함 ⑧ 국제감축사업의 추진방법 및 절차 (제32조부터 제38조까지) - 국제감축사업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조정실에 국제감축심의회를 설치하고,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은 국제감축심의회 심의를 거쳐 국제감축사업을 사전 승인하도록 하며, 국제감축사업의 사전 승인을 받은 자는 온실가스 감축량에 대한 모니터링을 수행하여 부문별관장기관의 장에 보고하도록 함 - 환경부장관은 사전 승인된 국제감축사업과 신고받은 국제감축실적을 등록·관리하기 위해 국제감축등록부를 전자적 방식으로 관리하도록 함 ⑨ 국가 및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 등의 수립·시행 및 추진상황 점검 (제41조부터 제43조까지) - 환경부장관은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환경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도록 함 -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환경부장관과의 협의 및 2050 지방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방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고, 매년 추진상황 점검결과 보고서를 작성하여 환경부장관 등에게 제출하도록 함 ⑩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 (제49조)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의 지정을 받으려는 시·도지사는 산업·고용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자체 계획 등이 포함된 신청서를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각각 제출하도록 함 - 산업통상자원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의 협의 및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지역을 공동으로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 ⑪ 기후대응기금의 운용·관리 (제64조부터 제69조까지) - 기획재정부장은 기후대응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회계 처리, 결산보고서 작성 등의 업무를 기획재정부장이 지정하여 고시하는 법인에 위탁하도록 함. -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종합적인 사항을 심의하는 기금운용심의회 위원장은 기획재정부 제1차관으로 하고, 그 위원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 기금 운용·관리에 관한 전문가 등으로 함	

② 입법(행정) 예고 법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기획재정부	• 「<u>시장접근물량 증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u>」 세계무역기구(WTO) 협정에서 정해진 시장접근물량*이 현재의 국내수요량을 충족시키지 못해 발생하는 수급불균형 및 가격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하여 저율관세로 수입되는 물량을 확대하려는 것임 * UR 협상 당시 일부 수입제한 농림축산물에 대해 높은 관세율로 양허하면서 최소한의 시장접근을 보장하기 위해 설정된 물량으로, 시장접근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 초과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 부과 주요 내용으로는 ① 우크라이나 사태, 국제유가·원자재 가격 상승 등 대외요인에 의한 국내 영향을 최소화하고, 국내 생활물가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대두의 시장접근물량을 현행 185,787톤에서 253,749톤으로 늘리는 등 3개 물품에 대한 시장접근물량을 추가로 늘려 2022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하려는 것임 ※ 의견 제시기간 :3/21(월)~3/31(목)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기획재정부(산업관세과)로 제출	2022-03-21
국방부	• 「<u>방위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u>」 국내 기업의 방산수출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수출을 촉진하기 위한 개정사항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수출예비승인 및 국제입찰 참가승인 관련 예외사유 확대 (안 제57조) - 현재 주요방산물자 및 국방과학기술에 대한 수출예비승인 또는 국제입찰참가승인을 1인에게만 승인하고, 예외적인 경우에만 복수 승인을 허용하고 있음 - 수출시 국내업체 간 출혈경쟁을 방지하고 방산기술 등의 유출을 방지하는 데 제도의 타당성이 인정되나, 사인 간 경쟁에 국가가 과도하게 개입하는 조치로 인식되고 방산수출에 부정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그 사유를 확대하고자 하는 것임 ※ 의견 제시기간 : 3/21(월)~5/2(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국방부(전력정책과)로 제출	2022-03-21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산업통상 자원부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령 제정령안」 최근 4차 산업혁명의 확산과 비대면 경제의 활성화에 따라 디지털 기술을 적용한 비즈니스의 변화·창출이 확산되고 있으며, 제품의 개발·생산·유통·소비 등 밸류체인 전반에 걸쳐 생성되는 산업데이터와 AI 등 디지털기술의 산업현장 활용의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전망됨 하지만 산업데이터의 다양한 형태와 방대한 범위, 전문인력의 부재 등으로 인해 국내 기업의 디지털 기술 도입은 저조한 실정이며, 이에 대한 정책적 지원 필요성이 있어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이 제정(법률 18692호, 2022.1.4. 제정, 2022.7.5.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법령의 목적과 범위·용어 (안 제1조, 제2조) - 시행령의 목적, 국가기관등의 범위 명시 및 단순 용어 정의 ② 종합계획의 수립 (안 제3조) - 산업 디지털 전환을 위한 종합계획 수립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 ③ 실태조사의 범위·방법 등 (안 제4조) - 종합계획 수립 등에 활용 위한 산업 디지털 전환 실태조사의 내용·절차 ④ 산업디지털전환위원회와 전문위원회의 구성·운영 (안 제5조, 제6조) - 위원회의 구성·운영 구체화 ⑤ 산업 디지털 전환 선도사업의 발굴·선정·지원 (안 제7조, 제8조) - 민간 파급효과가 높은 선도사업의 선정·절차·지원 규정 ⑥ 규제개선의 지원·적용 (안 제9조, 제10조) - 선도사업에 참여하는 기업 등에 대한 규제개선 지원절차 ⑦ 산업 디지털 전환 협업지원센터의 운영 등 (안 제11조, 제12조, 제13조) - 협업지원센터의 업무, 지정요건, 지정·재지정·취소 절차 등 ⑧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등 (안 제14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요건, 모집방법, 지정 절차 등 ⑨ 산업 디지털 전환 국제협력 (안 제15조) - 산업 디지털 전환 국제협력의 법적 지원 근거 ⑩ 전담기관 지정 (안 제16조) - 산업 디지털 전환 전담기관의 업무·지정절차 ※ 의견 제시기간 : 3/23(수)~5/2(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디지털전환추진단)로 제출	2022-03-23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산업 디지털 전환 촉진법 시행규칙 제정령안」 주요 내용으로는 ① 법령의 목적 (안 제1조) - 시행규칙의 목적 명시 ②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의 기준과 신고절차 (안 제2조, 제3조) - 산업 디지털 전환 지원 전문회사의 신고요건 · 제출서류 등 신고 절차 구체화 ③ 협업지원센터의 지정 (안 제4조) - 협업지원센터 지정서 명시 ④ 산업 디지털 전환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 (안 제5조) - 전문인력 양성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 제출해야 할 서류 · 지정서 등 절차에 관한 사항 ⑤ 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등의 선정 방법 (안 제6조) - 산업 디지털 전환 우수기업 선정에 관한 세부사항 ※ 의견 제시기간 : 3/23(수)~5/2(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산업디지털전환추진단)로 제출	2022-03-23
	•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령안」 최근 미국과 중국 간의 패권분쟁 등에 따라 공급망 재편이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주요국은 첨단산업 경쟁력이 국가 안보라는 인식하에 적극적인 관련 산업 육성정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우리나라는 반도체 · 배터리 분야에서 선두권이나 안주해선 안되고, 초격차 경쟁력 실현을 위한 꾸준한 노력이 필요함. 이를 위해, 국가 · 경제 안보에 핵심적인 반도체 등 주요 산업에 대한 강력한 육성과 보호 체계를 마련할 필요가 있어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법률 제18813호, 2022.2.3. 제정, 2022.8.4. 시행)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전략산업 등 육성 · 보호 기본계획 및 실행계획에 포함되는 내용과 수립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함 (안 제3조 ~ 제8조) ②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현황조사 사항 및 방법, 통계 작성 범위와 통계 전문기관의 지정 내용을 규정함 (안 제9조 ~ 제11조)	2022-03-23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③ 국가첨단전략산업위원회, 기술조정위원회, 분야별 전문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내용 규정함 (안 제12조 ~ 제18조) ④ 긴급수급안정화조정 절차와 자료의 제출 등을 규정함 (안 제19조 ~ 제20조) ⑤ 전략기술의 지정·변경 및 해제하기 위한 기준과 절차를 구체화함 (안 제21조 ~ 제24조) ⑥ 전략기술의 수출과 전략기술보유자의 해외 인수·합병 등에 대한 내용과 절차를 구체화함 (안 제25조 ~ 제29조) ⑦ 전략기술의 보호조치와 전문인력 등의 지정·관리 등에 관한 내용을 규정함 (안 제30조 ~ 제32조) ⑧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지정지역, 지정 요건 및 절차, 지정 해제 등에 관한 주요 기준과 특화단지육성시책에 포함되는 내용을 구체화함 (안 제33조 ~ 제36조) ⑨ 전략산업 특화단지의 신속처리 대상 인·허가 등 의제, 운영 지원, 입주기관 지원, 민원의 신속처리 등 특례 내용을 구체화함 (안 제37조 ~ 제42조) ⑩ 전략산업 등과 관련한 중소기업 등의 혁신발전 지원, 기술개발사업 추진, 특별회계 등의 종류, 규제개선의 신청·관리·감독, 투자 활성화 지원 등을 규정함 (안 제43조 ~ 제50조) ⑪ 전략산업 등의 전문인력 양성사업과 계약학과·특성화대학·전략산업종합교육센터 등의 지정 및 설치, 해외 우수인력 정보의 활용 등을 구체화함 (안 제51조 ~ 제57조) ⑫ 전략산업 등의 연대협력 촉진을 위한 협의회 구성 및 운영, 연대협력모델의 선정 및 지원 등의 내용을 규정함 (안 제58조 ~ 제60조) ⑬ 권한의 위임·위탁, 과태료의 부과기준 등 특별법의 보칙에 관한 사항을 구체화함 (안 제61조 ~ 제62조) ※ 의견 제시기간 : 3/23(수)~5/2(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산업통상자원부(산업정책과)로 제출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해양수산부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안」 수산부산물은 칼슘, 단백질 등 유용한 성분이 다량 함유되어 재활용 가치가 매우 높아 식품 원료와 비료, 사료, 의약품, 화장품 등의 원료로 자원 재순환성이 높음에도 불구하고 「폐기물관리법」 규정에 따라 폐기물로 분류되어 소중한 자원이 낭비되고 수산인들의 부담이 가중되었음 이에 수산부산물을 친환경적이며 위생적으로 처리하고 그 재활용을 촉진하여 수산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하여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법률 제18318호, 2021. 7. 20. 공포, 2022.7.21. 시행)을 제정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 및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적용대상 수산부산물의 종류 (안 제2조) - 이 법의 적용대상 수산부산물은 패류 중 굴, 전복(오분자기 포함), 홍합(담치 포함), 꼬막(피조개 포함), 바지락, 키조개에서 식용으로 사용되는 내용물을 제거한 껍데기로 함 ② 수산부산물 분리배출의무자 (안 제6조) - 패각 등 수산부산물 분리를 위해 육상에 별도로 설치된 작업장을 운영하며 제2조에 따른 수산부산물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 「식품위생법」 또는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산물가공업을 위한 시설을 운영하며 제2조에 따른 수산부산물을 연간 10톤 이상 배출하는 자를 분리배출의무자로 정함 ③ 수산부산물 분리배출 기준과 절차 (안 제7조) - 분리배출의무자는 부산물을 종류별로 수집·운반·보관하고, 다른 폐기물과 섞이지 않게 함. 부산물이 누출되거나 침출수가 유출되지 않도록 하고, 재활용·보관가능 장소 외에 보관하지 않으며, 재활용하려는 자가 부산물을 보관하는 경우에는 재활용시설과 같은 사업장에 있는 시설에 보관하여야 함 ④ 처리업 허가기준 (안 제10조) - 수산부산물 처리업 허가를 취득하고자 하는 자는 차량·보관설비 등 물적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수산부산물 중간처리업의 경우 전문인력 등 인적 요건을 충족하여야 함 ⑤ 행정처분 (안 제12조), 과징금 (안 제14조) 또는 과태료 (안 제19조) -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위반행위에 따른 행정처분을 차등화 - 위반행위에 따라 연평균 매출액의 100분의 5 이하를 곱한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할 수 있도록 함. - 과태료 부과 합리성을 높이기 위하여 법령 위반횟수에 따라 부과금액을 차등화하고 위반행위의 정도, 동기 및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부과금액을 감경할 수 있는 사유를 정함 ※ 의견 제시기간 : 3/23(수)~5/2(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로 제출	2022-03-23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수산부산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①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별 세부분류 (안 제2조 및 별표 1) - 연안환경개선·해양정화를 위한 재료, 제철소 소결제·탈황제 등 석회석 대체재, 건설 자재 혼합원료 및 인공어초, 비료, 사료, 화장품, 의약품, 식품 또는 식품첨가물 등 수산 부산물의 재활용 유형을 정하고 유형별 재활용 방법 등을 정함. ② 수산부산물 재활용 통계조사 (안 제3조) - 시·도지사는 매년 3월 31일까지 수산부산물 종류별 발생현황, 수산부산물 재활용시설 및 처리업체 현황, 수산부산물 재활용 유형별 재활용현황, 시행계획의 이행상황 등을 전자적 방식으로 해양수산부 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③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허가신청 (안 제4조) - 수산부산물 처리업을 하려는 자는 필요한 시설·장비 및 인력 등을 갖추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사업장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 해당 서류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허가를 신청한 자가 허가요건을 실제로 갖추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현장을 점검해야 함. ④ 휴업과 폐업 등의 신고 (안 제7조) - 수산부산물 처리업의 휴업·폐업 또는 재개업을 하려는 자는 휴업·폐업일로부터 30일 전 또는 재개업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고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함. ⑤ 재활용제품의 유해성 시험·조사·연구 또는 분석의 지원 (안 제8조) - 수산부산물의 재활용제품을 제조하는 중간처리업자가 재활용 제품의 품질 향상을 위한 기술적 지원을 받고자 하는 때에는 국립수산물과학원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의뢰서 및 시료를 국립수산물과학원에 제출해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에 따른 시험·조사·연구 또는 분석에 소요되는 수수료를 지원할 수 있음. ※ 의견 제시기간 : 3/23(수)~5/3(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해양수산부(양식산업과)로 제출	2022-03-23

소관부처	법률안	예고일자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 시 필요한 경우 어업인 등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수렴하도록 하는 내용으로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이 일부개정(법률 제18694호, 2022.1.4. 공포, 2022.7.5. 시행)됨 이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이해관계자 의견수렴의 절차 등을 규정하고,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에 대한 의견수렴 권한을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는 한편, 기존 법령의 어려운 용어 또는 문장 등을 정비하려는 것임 주요 내용으로는 ①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절차 (안 제7조의2 신설) - 공유수면관리청이 공유수면 점용·사용허가와 관련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들으려는 경우 공유수면관리청의 게시판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관련 사항을 공고하도록 하고, 점용·사용허가로 수산자원 및 어업에 피해가 예상되는 경우에는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 및 중앙회 등 어업 관련 기관 또는 단체의 의견을 추가로 듣도록 함 ②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권한 위임 (안 제73조) - 해양수산부장관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의 점용·사용허가 및 협의·승인에 따른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권한을 해양수산부장관이 지방해양수산청장에게 위임하도록 함 ※ 의견 제시기간 : 3/23(수)~5/3(화)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 또는 해양수산부(해양공간정책과)로 제출	2022-03-24

③ 법률 발의안 *해당 법률안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법제사법 위원회	•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2인)」 현행법은 이사에게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그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도록 하는 충실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물적분할 등과 같은 자본거래 과정에서 이사의 행위가 회사에는 아무런 영향이 없으나 단지 주주 사이에서 부의 이전의 결과만 가져오는 경우 이로 인해 특정 주주에게 피해가 발생하더라도 이사의 임무해태가 아니어서 이사는 어떠한 책임도 지지 않는 바, 이와 같이 기업 가치의 변화가 없거나 심지어 증가하지만 일반주주의 가치가 저하되는 경우 지배 주주와 일반주주 사이의 이해상충 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입법 대응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이사의 충실의무의 대상에 주주의 비례적 이익을 추가함으로써 회사에는 영향이 없더라도 일반주주의 가치가 훼손되는 경우 이사에게 주주에 대한 보호 의무를 부과하려는 것임 (안 제382조의3)	2022-03-22
	•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서동용의원 등 10인)」 2017년 11월, 제주 생수공장에서 현장실습 중 목숨을 잃은 이민호 군 사망사고, 21년 10월, 여수의 요트업체에서 잠수작업을 하다 목숨을 잃은 홍정운 군 사망사고가 보여주듯 직업계고 현장실습생은 중대재해 위험에도 노출돼 있음 이에 현장실습생을 종사자 범위에 넣어 명시하고(제2조제7호 라목 신설), 현장실습생이 실습 중인 사업장은 5인 미만 사업장이어도 적용 예외를 받지 않도록 하여(제3조 단서 신설) 현장실습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하고자 함	2022-03-24
정무 위원회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1인)」 금융상품의 상품구조, 판매단계가 복잡해짐에 따라 금융사고 및 금융 관련 분쟁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이를 담당하는 금융감독원은 인력의 한계 등으로 금융분쟁을 신속하게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권익보호를 위한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또한 금융분쟁 조정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쟁조정기구인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조정안을 금융회사가 거부하는 경우가 많아 현행 제도로는 금융소비자 피해 구제의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2022-03-18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이에 금융분쟁 관련 조정 및 중재 업무를 담당하는 독립기관인 “금융분쟁조정중재원”을 설립하고 기존 금융감독원 소속의 금융분쟁조정위원회를 새로 설립되는 금융분쟁조정중재원으로 이관하는 한편, 분쟁조정기구가 제시하는 분쟁 조정안을 금융소비자가 수락하면 금융회사의 수용여부와 관계없이 재판상 화해와 동일한 효력을 갖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32조의2 신설, 제33조 · 제34조, 제39조제2항 및 제42조의2부터 제42조의4까지 신설 등)	
	• 「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이정문의원 등 12인)」 최근 인터넷 사이트 및 온라인 플랫폼 등에서 이용자의 사전동의 없이 검색기록 등 행태정보를 수집해 맞춤형 광고를 게재하는 방식으로 영업하는 기업이 급증하고 있음 현행법은 개인을 구체적으로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중심으로 규율하고 있어 행태정보에 대한 보호 범위가 불명확하고, 온라인 맞춤형 광고 가이드라인 등을 통해 행태정보 수집을 고지하고 이용자의 통제권을 보장하도록 하고 있으나 구속력이 약해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점에서, 행태정보의 무분별한 수집으로 인한 권리 침해를 방지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이에 현행법상 개인정보의 개념 중 ‘다른 정보와 결합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에 온라인상의 행태정보가 포함됨을 명시하여 행태정보 보호에 대한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안 제2조제1호나목)	2022-03-18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3인)」 현행법령은 주권상장법인의 분할 또는 분할합병에 관한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하고 있으나 물적분할의 경우는 제외하고 있음 최근 주권상장법인이 물적분할을 공시하는 경우 주가가 하락하여 소액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물적분할의 경우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어 인적분할의 경우와 달리 주가 하락의 위험을 피할 방법이 없음 이에 물적분할의 경우에도 이사회 결의에 반대하는 주주에게 주식매수청구권을 부여함으로써 증권시장의 공정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안 제165조의5)	2022-03-21

소관위	법률안	제안일자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용우의원 등 14인)」 현행법은 주권상장법인이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등 제한된 경우에 한하여 특정한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 기회를 부여하고 있음 최근 주권상장법인이 물적분할을 공시하는 경우 주가가 하락하여 소액주주들이 큰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으나 현행법상 물적분할의 경우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을 부여하고 있지 아니하여 결과적으로 소액주주의 손실을 보전할 방법이 없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대한 대책으로 분할신설법인이 모집하는 신주를 분할된 법인의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는 방식이 효과적이라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를 증권시장에 상장시키기 위해 신주를 모집하는 경우 모집하는 신주의 100분의 50 이상을 분할되는 회사의 소액주주들에게 우선 배정하도록 함으로써 물적분할로 인한 소액주주의 피해를 최소화하도록 하기 위한 것임 (안 제165조의6)	2022-03-23
	• 「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홍문표의원 등 11인)」 국가균형발전을 위한 지방은행의 활성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는 정부 또는 예금보험공사와 달리 은행 주식 보유 규모에 제한을 받고 있어 지방은행의 설립 및 지원에 필요한 자본금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이에 정부, 예금보험공사와 마찬가지로 지방자치단체도 은행의 주식보유한도 규정의 예외를 적용받을 수 있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으로써 지방은행 설립 및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려는 것임 (안 제15조제1항제1호)	2022-03-23
기획재정위원회	•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조명희의원 등 12인)」 2023년 1월 1일부터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상자산을 양도·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은 분리과세되는 기타소득으로 보아 250만원을 초과하는 가상자산소득에 대해서는 20%의 소득세가 부과될 예정임 같은 날부터 부과될 금융투자소득세의 경우 금융투자소득금액에서 5천만원을 기본공제하고 금융투자소득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 20%,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 25%의 세율을 적용할 예정인데, 금융투자소득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가상자산소득세의 기본공제 금액과 세율을 금융투자소득세와 동일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2022-03-24

소관위	법률안	제안 일자
	이에 가상자산소득에 대하여도 5천만원을 기본공제 금액으로 하고, 과세표준이 3억원 이하인 경우 100분의 20,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에 대하여 100분의 25의 세율을 적용하려는 것임 (안 제64조의3제2항 및 제84조제3호)	
과학 기술정보 방송통신 위원회	•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권인숙의원 등 11인)」 현행법에 따라 부가통신사업을 신고한 자 또는 다른 사람들 상호간에 컴퓨터를 이용하여 저작물 등을 전송하도록 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자신이 운영·관리하는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불법촬영물이 유통되는 사정을 신고, 삭제요청 등의 방법으로 인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해당 정보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고,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조치의무사업자에게는 방송통신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한편,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경우, 이 과정에서 아동·청소년 성착취물의 촬영 등의 불법 행위가 발생했다는 것을 인지했다고 볼 수 있음 이에 조치의무사업자가 불법촬영물 등의 삭제·접속차단 등 유통방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이를 수사기관에 신고하도록 하려는 것임 (안 제22조의5제1항 및 제104조제6항 신설).	2022-03-23
산업통상 자원중소 벤처기업 위원회	•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김경만의원 등 11인)」 산업통상자원부는 에너지 복지를 위하여 1987년부터 「도시가스사업법」에 따라 도시가스(LNG)를 공급하기 시작하였고, 2014년부터는 도시가스가 공급되지 아니하는 농·어촌 지역에 마을 단위로 액화석유가스(LPG) 소형저장탱크와 배관망을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여 해당 지역주민의 연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있음 이는 서민연료라 불리는 LPG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에너지 복지를 향상하기 위해 꼭 필요한 시책이나, 기존 도시가스 미공급 지역에 액화석유가스를 공급하던 사업자의 판매량이 지속적으로 감소하면서 대부분의 중·소규모 판매사업자는 경영이 악화되고 있는 상황임 이에 허가받은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자가 경영악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폐업신고한 경우에는 시장·군수·구청장이 폐업에 따른 지원금의 지급, 사업전환의 지원 등을 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안 제11조의2 신설)	2022-03-24

3. 향후 국회 주요 주간일정(안)

기관	주요 일정		비고
상임위	아래 【별첨1】 참조		
국회사무처	4/1(금)	「해외의회 포커스」 제82호 발간	
국회도서관	3/29(화)	「최신 외국입법정보」 제189호 발간 - 완전 자율주행차 충돌시 이용자 보호에 관한 미국의 입법례	
	3/29(화)	현안입법 알리기 - 층간소음방지를 위한 절차적 규정 마련	
예산정책처	3/29(화)	「NABO 경제 · 산업동향&이슈」 3월호 발간 - 재정수지와 경상수지의 관계 분석 등	
입법조사처	3/30(수) 07:30	제15회 「NARS 시선과 논단」 개최 - 우리 사회의 변화와 갈등, 언론의 역할은 무엇인가?	ZOOM

[별첨1] 제394회 국회 임시회 상임위원회 의사일정(안)

위원회	일시	구분	내용
과방위	3/30(수) 15:00	전체회의	법안상정, 국정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메타버스산업 진흥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
외통위	3/28(월) 14:00	전체회의	긴급 현안보고 (외교부, 통일부)
국방위	3/29(화) 15:00	전체회의	긴급 현안보고
문체위	3/29(화) 10:00	전체회의	법안 상정
	3/29(화) 14:00	전체회의	「전통무예진흥법」 전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공청회, 「한국예술종합학교 설치법안」 등에 대한 공청회
	3/30(수) 10:00	문화예술법안소위	법안 심사
	3/30(수) 14:00	체육관광법안소위	법안 심사
	3/31(목) 10:00	전체회의	법안 의결

4. 향후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주요 일정(안)

일자	제목	주최	장소
3/28(월) 10:00	급변하는 세계질서와 새 정부의 과제	김한정, 김경협 의원실, 국회 한반도평화포럼	의원회관 1소회의실
3/28(월) 14:00	차기정부 온라인플랫폼 자율규제 도입방안 토론회	김영식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3/29(화) 14:00	국산 의료기기 수출확대를 위한 유럽 신의료기기법 MDR 대응 전략 세미나	이주환 의원실, 스마트의료기기진흥재단	의원회관 1소회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별첨2] 지난 주 뉴스레터(제127호) 중 국회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 첨부

* 해당 내용을 클릭하시면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국회 소속기관>

기관	주요 일정		비고
국회사무처	3/25(금)	「해외의회 포커스」 제81호 발간	
국회도서관	3/21(월)	「팩트북」 제93호 발간 - 주요국의 국가전략	
	3/22(화)	「최신 외국입법정보」 제188호 발간 - 주요국의 그린워싱 방지 입법례	
	3/24(목)	「최신정책정보: 국내」 제95호 발간 -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 전개 및 전망 등	
	3/24(목)	「현안, 외국에선?」 제32호 발간 - 미국의 도심항공교통(UAM) 준비 현황, LA 사례를 중심으로	
예산정책처	주중	「예산정책연구」 제11권 제1호 발간 - 탄소중립에 따른 발전부문 에너지체제의 중장기 세수 전망과 시사점	
입법조사처	3/21(월)	「이슈와논점」 발간 -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2025)」에 따른 공공병원 확충 정책 및 향후 과제에 관한 보고서	

<국회의원실>

일자	제목	주최	장소
3/22(화) 10:00	과학기술 선도국가를 위한 과학기술 거버넌스 개편 방안	김영식, 이영, 조명희 의원실	의원회관 1소회의실
3/22(화) 13:30	새정부 기후위기 적응대책, 무엇을 담아야 하나 - IPCC 6차 평가보고서 제2실무그룹 보고서 발간 기념	국회기후변화포럼, 한정애 의원실 외	의원회관 3세미나실
3/23(수) 10:00	디지털 시대, 대한민국 협력경제의 길 - 플랫폼 경제 현황과 방향	김종민, 유동수, 윤창현 의원실 외	의원회관 1소회의실

※ 위 토론회 및 세미나 관련 자료들은 추후 제공 예정

법무법인(유) 세종 입법전략자문팀(Legislative and Government Affairs Team)은 기존 명망가, 고위관료 출신의 인재와 함께 국회 및 정부부처 출신의 실무 전문인력들이 유기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대관 및 규제대응업무 전문팀입니다. 다양한 네트워크와 풍부한 실무경험을 바탕으로 고객의 요구에 맞춤형 Total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자부합니다.

상기 사항에 대하여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도움이 필요하신 경우에는 언제든지 아래 연락처로 연락을 주시면 더욱 자세한 내용을 제공하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정 분야에 대해 “법률 제·개정 사항과 동향 파악, 정부정책 등에 대한 모니터링이나 Legal 분석” 등이 필요하신 경우에도 연락주시면 최선을 다해 도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For Questions or Comments

- | | | |
|---|----------------|-----------------------|
| • 백대용 파트너변호사 | T. 02-316-4630 | E. dybaek@shinkim.com |
| • 박현주 (Hyunju Helen Pak) 선임외국변호사 | T. 02-316-4212 | E. hpak@shinkim.com |
| • 김성범 파트너변호사 | T. 02-316-4432 | E. sbkim@shinkim.com |
| • 홍정아 (Claudia Hong) 선임외국변호사 | T. 02-316-4487 | E. cahong@shinkim.com |
| • 방세희 소속변호사 | T. 02-316-1773 | E. shbang@shinkim.com |
| • 노지은 소속변호사 | T. 02-316-2573 | E. jeroh@shinkim.com |
| • 서예지 소속변호사 | T. 02-316-1787 | E. yjiseo@shinkim.com |
| • 나인선 소속변호사 | T. 02-316-1795 | E. isna@shinkim.com |
| • 문응필 소속변호사 | T. 02-316-4047 | E. epmoon@shinkim.com |
| • 최유리 소속변호사 | T. 02-316-1748 | E. yrchoe@shinkim.com |
| • 성재열 소속변호사 | T. 02-316-1777 | E. jysung@shinkim.com |
| • 조성환 소속변호사 | T. 02-316-2596 | E. suhcho@shinkim.com |

SHIN & KIM

법무법인(유) 세종

법무법인(유)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이에 수록된 내용은 법무법인(유) 세종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인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알려드립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 LLC'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